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4

발의연월일: 2024. 7. 2.

발 의 자: 박홍근・이용선・이수진

서영교 · 정태호 · 박균택

한정애 • 문금주 • 조정식

이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 시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 부과됨.

그런데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과중한 부담금이 부과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필수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필수 공공시설 설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호).

법률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		
가.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에	100분의 20	없음
녹지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용 가설건축	100분의 50	없음
물 및 임시시설		
다. 그 밖의 시설	100분의 130	없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별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